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회

CONTENTS

- 01 추진배경
- 02 제도 도입 목적
- 03 신고 대상 업종
- 04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프로세스
- 0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06 미술 서비스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신고
- 07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
- 08 미술 서비스업자 진품증명서 관련 의무

1 추진배경(근거 조항)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시행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 · 구가 있는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도 도입 목적

1

미술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

-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 작가육성지원(화랑업), 인력 양성(감정업, 전시업), 운송·보험비 지원(감정업, 대여·판매업, 화랑업) 등

2

미술시장 투명성 강화

- 유사감정서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

3

재판매보상청구권 시행 기반 마련

- `27년 7월 시행 예정

3 미술 서비스업 신고 대상 업종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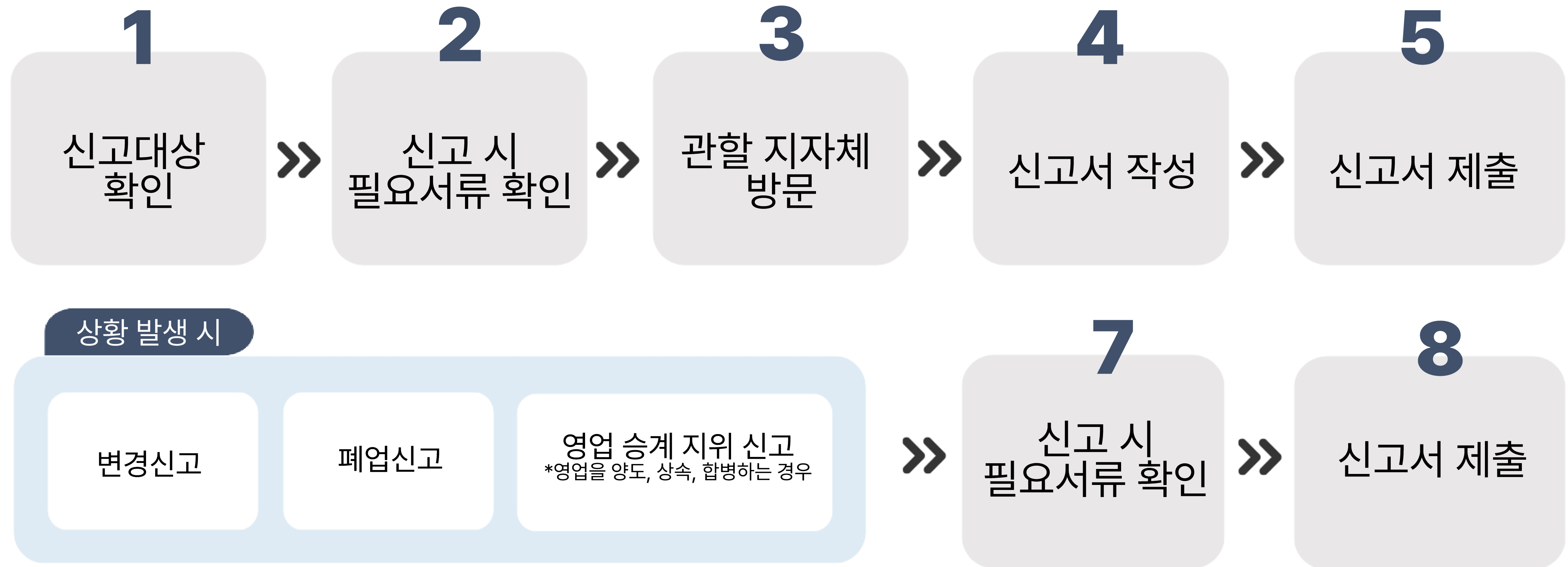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4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프로세스



*(미술진흥법 제19조·제33조) 미신고·변경신고 미이행·지위승계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허위 신고시 영업폐쇄 대상, 서비스업자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등 처분 대상이될 수 있음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제4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1항제3호	영업폐쇄			

* 법 제18조제4항 제1호~3호, 5호, 6호

- 제1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 :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 제6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임원 또는 감사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라. 미술 창작·기획 또는 미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됨(법 제15조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마.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 법 제15조제5항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에 한정한다.

- 1.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 2.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 3.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4. 자신이 소유·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릴 것

*** 법 제15조제6항 :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할 것
- 2.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5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 제1호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바.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 제3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또는 미술 전시업을 한 자

6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 신고 시 필요한 항목

1

신고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상호

3

영업장
소재지

4

영업장
전화번호

5

미술서비스업
종류

✓ 변경 시 필요한 항목

6

신고번호

7

신고 연월일

8

변경사항
(변경전/후)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영업장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에만)

6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서 양식

신고 시 필요한 항목 →

변경 시 필요한 항목 →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항목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변경)신고서

본 신고서의 작성을 위한 신고인의 작성일자, 신고일, []에는 해당하는 공백, []은 신고를 하지 않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전화번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미술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합니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채워진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4 -

6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

✓ 폐업신고 시 필요한 항목

1

신고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미술 서비스업
업종

3

영업
폐지일

4

폐지 사유

5

신고증
분실사유
(분실 시)

*제출서류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6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양식

신고 시 필요한 항목 →

제출서류 항목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분	항목	비고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전화번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세부 신고업종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폐업일	
	폐업사유	
	신고증의 분실사유(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미술진흥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항목	비고
신고인 제출서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폐업신고 수리 및 신고사항 말소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7 -

6 미술서비스업 지위승계신고

✓ 신고 시 필요한 항목

1

양도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양수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양도인의
상호(명칭)

4

양도인의
신고번호

5

주 영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6

양수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7

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업종)

8

지위승계
연월일

제출서류

- ① 양도자(사망자, 법인)의 미술서비스업 신고증
- ② 지위승계 증명서류
 - 영업 양도·양수 증명 서류 사본 1부, 양도인 신분증 사본 1부
(함께 방문하면 서류 제출 면제)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 증명서류 1부
 -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신고서 양식

신고 시 필요한 항목



제출 서류 및 확인사항 항목



| 앞면 |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승계 전의 미술서비스업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승계하는 자(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승계하는 자가 사용할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승계 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번호	
	지위승계 세부 업종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지위승계 연월일 []양수 []상속 []합병	

「미술진흥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인등록번호가 적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8 -

15

6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신고서 양식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미술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상황

위반행위 적발일	위반내용	절차의 진행사항

1)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일 및 위반행위 적발일에 “없음” 이라고 적습니다.

2) 양도·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 등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내용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미술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이전에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에게 그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 뒷면 |

16

6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양식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1.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3.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생년월일:
4.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5. 세부 업종:

「미술진흥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5 -

6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 양식

■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합니다)	전화번호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세무 신고업종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열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7 미술품 감정업자의 의무

- 미술품 감정 의뢰자,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해야 함
-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
- 자신 또는 가족이 소유·관리·유통하는 미술품 중 불공정한 감정 우려가 있을 시 단독 감정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해야 함
- 감정에 따른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을 수 없음
-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제공 금지

7 진위감정서 양식

진위감정서 양식

1. 작품 이미지

2. 작품정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단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규격	(단위는 센티미터, 평면 작업은 세로, 가로 순서로, 입체 작업은 높이, 폭, 깊이 순서로 기재)

3. 감정결과

(감정결과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것)

4. 감정인

성명	소속	서명

•감정인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서 뒷면이 필요로 함

본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5조제6항제4호에 따라 발급하며
감정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감정하였습니다.

2000년 00월 00일

감정업자(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정업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5. 기타 참고자료

1) 작품 관련 세부사항

(작품 내 서명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사항)

2) 감정의 근거

☐ 감정의 작업 범위 ☐ 감정 방법 ☐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 ☐ 작가에 대한 조사 내용

☐ 특기 사항 및 참조 의견 등을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7 시가감정서 양식

시가감정서 양식

1. 작품 이미지

2. 작품정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규격	(단위는 센티미터, 평면 작업은 세로, 가로 순서로, 입체 작업은 높이, 폭, 깊이 순서로 기재)

3. 감정의 기준 시점 :

4. 감정의 목적 및 근거

1) 감정의 목적
☐ 매매 ☐ 청산 ☐ 보험 ☐ 기증 ☐ 세무(상속·증여 등) ☐ 회계처리
☐ 기타 ()

2) 감정의 근거

☐ 감정의 작업 범위 ☐ 가치 평가 방법 ☐ 시장 분석 결과 ☐ 작품에 대한 조사 내용
☐ 작가에 대한 조사 내용 ☐ 특기 사항 및 참조 의견 등을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4. 감정결과

(감정결과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품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수치를 포함할 것)

5. 감정인

성명	소속	서명

*감정인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서 뒷면에 별도로 첨부

본 감정서는 「미술진흥법」 제15조제6항제4호에 따라 발급하며
감정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감정하였습니다.

2000년 00월 00일

감정업자(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정업자(단체)의 주소 및 연락처

6. 기타 참고자료

1) 작품 관련 세부사항

(작품 내 서명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정하는 사항)

2) 감정인의 세부정보

감정관련 이력사항	(정부서류로 이력서, 자격증빙서류 등 제출 가능)
특수관계여부	(감정 대상 작품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작품의 판매위탁, 전시 컨설팅 등 특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8 미술 서비스업자 진품증명서 관련 의무

미술 서비스업자

미술품 진품증명서 발행

- 미술품 구매자는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진품증명서 내용

-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 진품증명서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8 진품증명서 서식

진품증명서 서식

1. 작품 이미지

2. 작품정보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매체 및 기법	(판화 등 복수 제작이 가능한 경우 에디션 번호 포함)
작품규격	(단위는 센티미터, 평면 작업은 세로, 가로 순서로, 입체 작업은 높이, 폭, 길이 순서로 기재)

[작가명/사업자명]은/는 「미술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진품증명서를 발행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작가] _____ (서명 또는 인)

[미술 서비스업자] _____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연락처

3. 작품의 과거 이력

(작품의 소장 이력, 경매 기록 이력, 출판 기록, 전시 이력 등)

4. 작품 세부사항

(작품 내 서명 위치와 형태, 작품의 보존 상태나 수리 이력, 작품의 독특한 특징 등 작품을 특징짓는 사항)

5. 구매 정보

구매일자	
구매처	
구매자정보	(선택사항)
구매가격	(선택사항)

※ 보증이 제한되는 조건이나 범위,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의 조치 사항 등 보증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표시된 약관·계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본 증서를 교부하면서 구매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3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설명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